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철우

#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청년정책 업무의 총괄을 위한 분장사무 지정과,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소 명칭변경 등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분장사무 조정 (안제7조, 제8조)

- 청년정책 업무 신설 : 행정국
  -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총괄
- 고령화, 저출산 관련업무 이관 : 보건복지국 → 행정국
  - 청년 복지, 결혼 및 고령화저출산 대책 수립·지원

□ 소속기관(사업소) 명칭 변경 (안제8절 제목, 제56조의2)

○ (중전)충청북도서울본부 → (변경)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

- 국회, 정당 등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본부장 업무 반경 확대 필요

####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업무의 총괄을 위한 분장사무 지정과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소 명칭 변경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국에 청년정책 업무를 신설하고, 고령화, 저출산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며, 국회, 정당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본부장의 업무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서울본부를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로 명칭변경하는 것이된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국의 청년정책 업무 신설과 고령화, 저출산 관련업무의 이관, 그리고 충청북도서울본부의 명칭을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